대학안전관리계획

2022. 2.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목 차

Ⅰ.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 2

1. 목표 및 기본방향 ····· 4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6

Ⅱ.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8

1. 재난 ····· 8

[1] 자연재난 ····· 8

[2] 사회재난 ····· 13

2. 안전사고 ····· 15

[1] 대학 안전사고 ····· 15

[2] 교육시설 안전사고 ····· 22

[3] 연구실사고 ····· 23

3. 감염병 확산 ····· 24

[1]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24

4. 범죄 ····· 30

[1] 일반범죄 ····· 30

[2] 성범죄 ····· 34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40

[1] 산업재해 ····· 40

[2] 중대재해 ····· 40

목 차

Ⅲ.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50

Ⅳ.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52

Ⅴ.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59

Ⅵ.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63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 64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 65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 66

≪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별도첨부〕 ≫

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2.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2021)
3.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대테러센터)
4.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
5.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6.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7.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0)
8.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9. 교육시설안전 인증 자체평가서 작성요령(교육부, 2021)
10.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교육부, 2021)
11.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1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13.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14.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여성가족부, 2022)
15.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0)
16.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17. 2022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2)
18.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Ⅰ 목표 및 경영방침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안전의 힘. 미래를 여는 연구와 교육

목표

산업재해 · 안전사고 "ZERO"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유지 · 관리

추진과제

1	**사업장 안전** • 정기 및 상시 안전점검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2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유지 및 관리** • 관련 법령에 따른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내실화 • 계획-활동-평가-환류(P-D-C-A) 절차에 의한 안전사업 추진
4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2. 경영방침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우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하고 공개한다.

- 다 음 -

1. 지속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개선

안전보건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추진 결과를 주기적으로 평가, 분석함으로써 안전보건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 안전사고예방으로 무재해 대학원 구현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무재해 대학원 구현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3. 안전보건법규 준수

안전보건관련 국내법규를 준수하고 조직상황에 맞는 내부 관련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

4. 안전보건의식 제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보건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적극 지원한다.

5. 지속적 개선

쾌적한 근무환경의 조성, 위험성평가 시 자유로운 근로자 참여 및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 개선을 실시한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의 전 임직원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충분히
이해하여 실행·유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조화시켜
적극적인 참여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1년 9월 1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 유종일

3.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1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전 화	044-550-1114	FAX	044-550-1234	홈페이지	kdischool.ac.kr
총장	홍장표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유종일 (직책 : 대학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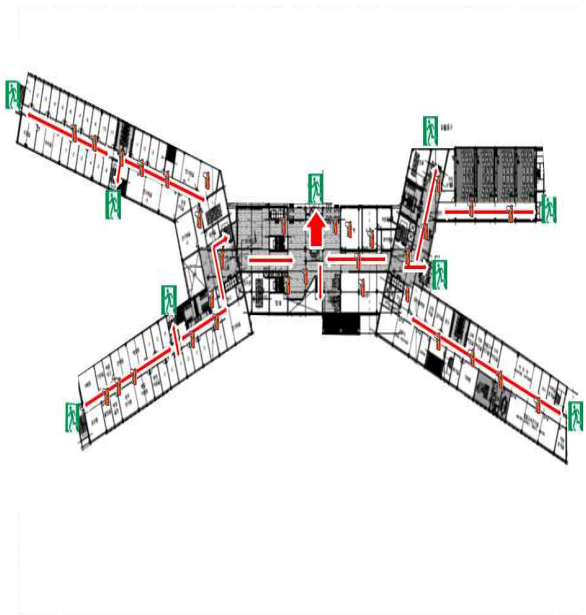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석사	박사		
		720	42	762	22.2.28 기준

교직원 (명)	교직원	전임교원	현업업무직원	학생보호인력	기타	합계
	141	41	1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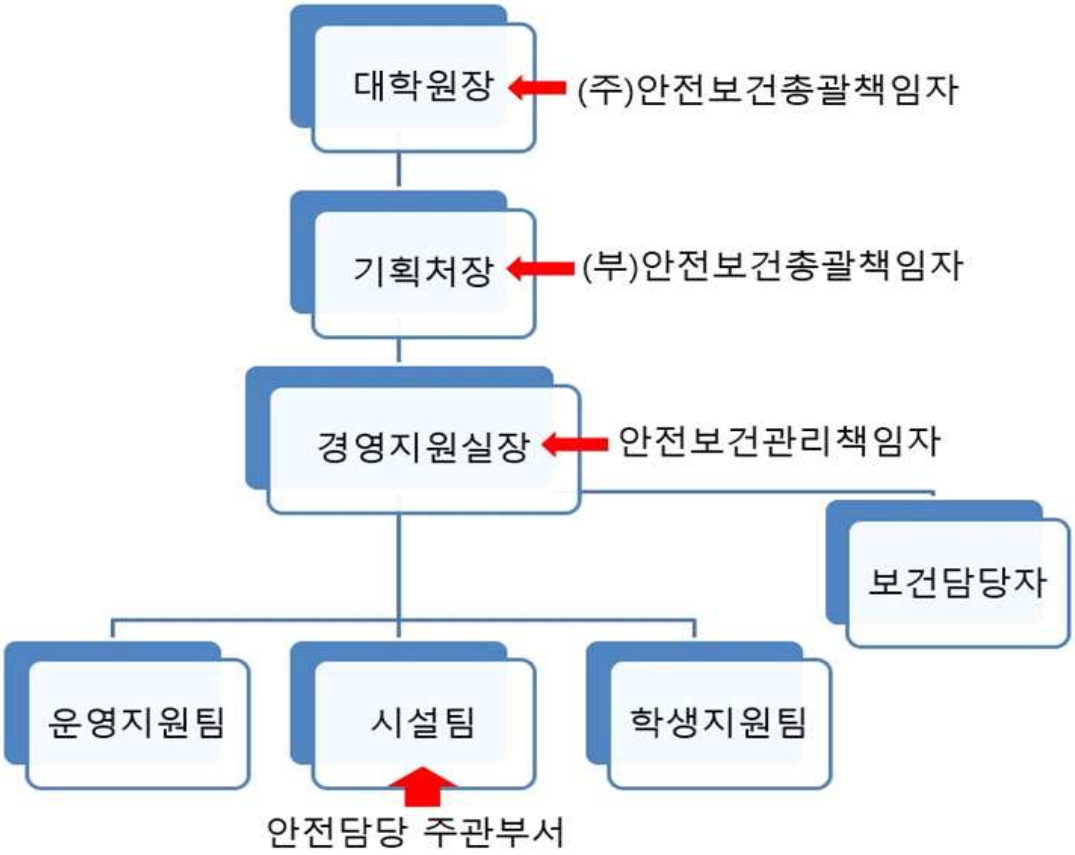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2 조직체계 현황

□ 안전조직도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팀	관계 부서
1. 재난	자연재난	시설팀	〃
	사회재난	시설팀	〃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시설팀	〃
	교육시설안전	시설팀	〃
3. 감염병	코로나 19	운영지원팀	〃
4. 범죄	성범죄	인권센터	〃
	일반범죄	시설팀	〃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설팀	〃
	중대재해처벌법	시설팀	〃
6. 기타	비상사태	시설팀	〃

Ⅱ 위험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 재난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팀	시설팀장	강성묵	044-550-1260 smkang@kdischool.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팀	안전 담당자	임선근	044-550-1239 sg_lim@kdischool.ac.kr	
팀장	운영지원팀	운영지원 팀장	권연택	044-550-1095 ytkwon@kdischool.ac.kr	협조부서
팀원	운영지원팀	보건 담당자	김태섭	044-550-1054 ts_kim@kdischool.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돗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예방 ·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 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 관련 매뉴얼 : [별첨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 [재난공통] 재난 예방 ·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

❶ 예방 · 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교육**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작성예 : 예방교육 >
◎ 대학 캠퍼스 구성원(교직원, 학생 포함) 교육실시(온라인교육)
- (실시) 여름철, 겨울철 각 1회 실시
- (홍보) 학기 초 각 대학(학부, 학과) 학생회를 통한 정기안전교육 홍보 실시
- (평가) 교육 후 평가·시험 실시(온라인교육) 및 우수학부(학과) 포상 실시 등

○ **홍보활동**

-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재난유형별 예방 활동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홍보 활동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❷ 대응 · 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정·부) 지정 관리

○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 **1단계** 관심, 주의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연락망 점검, 당직실,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

- **2단계** 경계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부서별 협의(긴급 대피, 홍보 등)
▪ 교내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 **3단계** 심각단계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재난관리본부 구성 및 대학합동상황실 운영
▪ 필요 시 재난관리본부 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지원
▪ 교육부 및 시 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협의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moe.go.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보고 후 유선연락
▪ 교육부 상황보고 및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 재난상황 보고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❸ 수습 · 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피해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 (피해신고)

○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복구계획(안)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의료반의 편성·운영
▪ 보건소, 보건지소 등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경상자는 원거리의 병·의원으로 후송
▪ 중상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으로 후송
▪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여부 확인 조치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진단 후 보상 내용 결정(장례비, 유족배상 등)
▪ 보상금 지급정산

- **구호활동**

▪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호센터 설치·운용
▪ 상황에 따라 군부대 또는 시·군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
▪ 의료활동 외에 상담 등 대피소 순회진료 등 구호활동 실시
▪ 피해지역 보건소장이 신속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보건 대책 현지 본부를 설치, 체계적인 구호활동 추진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원상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이 파손되어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
** (개량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 파손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

○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 대학 내 발생한 실험·실습실 사고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 및 예방활동에 활용
- 중대 안전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 작성예 : 모니터링 및 평가 >

◎ 모니터링 주요 결정사항

- 모니터링 대상 및 측정방법
- 재난(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피해현황 측정, 원인 분석 및 평가방안 모색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기 결정
- 사전 재난(사고)요인을 사고 발생 전에 식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 상기 활동에 대한 문서화 작업
-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

◎ 모니터링 주요 착안사항

- 각 대학의 지리적·환경적 요인 고려 및 최근 재난(사고)현황 사전 중점 분석
- 각 대학의 재난(사고)관리 정책의 적절성·시의성 및 준수 여부
- 재난(사고) 발생 후, 재난(사고)안전관리체계의 적절성 여부 등

◎ 모니터링 점검 활동을 통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모든 재난(사고)발생 매뉴얼에 반영

◎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사항의 원인 검토·제거, 유사 부적합사항 규명

※ 관련 매뉴얼 : [별첨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재산종합보험	10	10	10	30	
계	10	10	10	30	

※ KDI/KDI대학원은 공동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연재난에 대한 재산종합보험을 분담함(각 50%)

2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팀	팀장	강성묵	044-550-1260 smkang@kdischool.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팀	안전 담당자	임선근	044-550-1239 sg_lim@kdischool.ac.kr	
팀장	운영지원팀	팀장	권연택	044-550-1095 ytkwon@kdischool.ac.kr	협조부서
팀원	운영지원팀	보건 담당자	김태섭	044-550-1054 ts_kim@kdischool.ac.kr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이병권	044-550-1105 bklee@kdischool.ac.kr	
팀원	학생지원팀	팀원	김소율	044-550-1224 soyul_kim@kdischool.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관련 매뉴얼 : [별첨2]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2021)
[별첨3]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대테러센터)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관련 매뉴얼 : [별첨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 관련 매뉴얼 : [별첨4]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 등	57.5	63.9	70	191.4	
계	57.5	63.9	70	191.4	

※ 매년 정기적인 안전진단·점검, 안전검사 등

2. 안전사고

1 대학 안전사고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팀	팀장	강성묵	044-550-1260 smkang@kdischool.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팀	안전 담당자	임선근	044-550-1239 sg_lim@kdischool.ac.kr	
팀장	운영지원팀	팀장	권연택	044-550-1095 ytkwon@kdischool.ac.kr	협조부서
팀원	운영지원팀	보건 담당자	김태섭	044-550-1054 ts_kim@kdischool.ac.kr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이병권	044-550-1105 bklee@kdischool.ac.kr	
팀원	학생지원팀	팀원	김소율	044-550-1224 soyul_kim@kdischool.ac.kr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해,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예방 ·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 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정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관련 매뉴얼 : 대학안전사고 관리지침(교육부, 2022 예정)
[별첨5]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별첨6]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 **(교외활동)**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 관련 매뉴얼 : [별첨7]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0)
[별첨8]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 [안전사고 공통] 안전사고 예방 ·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

❶ 예방 · 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 · 관리)

○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개선
▪ 보행자·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차도 분리시설 마련
▪ 교내 공사장 주변에는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교내 차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출입지점과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설치·개선
▪ 교내도로는 양호한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의 바닥이 평평하고, 파손에 의한 틈새나 구멍이 없고, 흙이나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보행자들의 발이 미끄러지거나, 걸리거나, 부딪치거나, 헛 딛어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안내판의 설치 · 관리
▪ 교내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 · 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 방해물이 설치·적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속도 규정을 마련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 · 관리
▪ 교내도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 · 관리
▪ 교내 경사도로에는 미끄럼방지, 과속방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 수칙 마련·시행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입학식, 졸업식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참가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행사시설 점검·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요원 배치
-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행사계획 수립 시 「행사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사 시작 일 2주 전까지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 대규모행사의 경우 행사기획팀, 장소와 배치 설계, 의료진, 비상계획과 경비, 커뮤니케이션, 교통, 계약자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행사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승인요청서」와 함께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 행사장소 및 사람에게 차량 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경비인력 배치 등 예방대책 마련
- 행사승인 부서는 행사 관련 정보, 위험성 관리방안, 안전점검사항, 행사 예상 참가 인원, 행사 관련 계약업체, 보험가입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후 승인
- 행사승인 부서는 대규모행사를 준비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을 제공
- 행사와 관련한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계약업체나 서비스업체는 상해보험 가입
- 비상 시 신속한 대피·응급처치를 위해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구, 화재경보기를 확인하고, 비상 집합장소 지정, 신속한 사고신고·보고 방법 등을 포함한 비상 절차 마련
- 행사 시 전기안전, 식품안전, 행사에 사용되는 놀이기구 등의 안전지침 마련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확인·점검

○ **학생 집단활동 안전**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집단연수를 주관하는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기획자, 인솔자, 참가자의 역할과 책임
- 학생집단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승인
- 학생집단연수 참가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 사고 및 위기 발생 시의 대응계획
- 보험가입
- 비상 연락 체계와 방법
- 학생집단연수에 대한 감독 활동
- 참가자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사항
- 요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숙박 및 식사 안전

- 해외 학생 집단연수를 기획하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의 탐색·평가·관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집단연수 4주 전까지 학생처에 제출

* (포함사항) 방문지역, 수행 활동, 인솔자와 참가자 등

○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강의실, 강당/체육관, 도서관(실), 미술/음악/무용실, 주방/식당, 사무실/작업·실습실/회의실, 공용공간(현관/복도/계단/화장실), 체육장, 옥외 공간(조경/수경시설), 옥외 조형물 등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안전을 위한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시 대응절차 및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연락망 편성·관리 및 안내·배포
▪ 대학생활 관련 안전교육·훈련 제공 지원

❷ 대응 · 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
▪ 위험원으로 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이격 조치 및 상태 유지
▪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응급처치 시행 또는 치료 제공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사고등급평가 매트릭스 >

요인2. 학교운영에 미치는 영향 또는 관련된 행위의 심각성·피해규모	요인 1. 학생 및(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없 음	사 소	경 미	중 간	중 대	극 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없음	응급처치 또는 사고 스트레스/ 트라우마에 대한 주변의 지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손상	응급처치 또는 사고 스트레스/ 트라우마에대한 주변의 지원이 필요한 손상	통원치료 또는 사고 스트레스/ 트라우마에대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손상	입원치료 또는 사고 스트레스/ 트라우마에대한 지속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손상	사망, 영구장애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광범위한 의료지원 필요
극 심 ▪ **(상황)** 정상적인 학교운영 중단 및 (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즉각적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대규모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중 대 ▪ **(상황)** 학교운영에 전반적 지장 및 (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많은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사고	경 계	경 계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중 간 ▪ **(상황)** 학교운영의 중요 기능의 일시적 지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다수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경 계	경 계	경 계	경 계	심 각	심 각
경 미 ▪ **(상황)** 단순조치에 의한 학교운영 정상화가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할 수 있는 행위 발생 ▪ **(규모)** 몇몇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사고	주 의	주 의	주 의	경 계	경 계	심 각
사 소 ▪ **(상황)** 학교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경미한 지장 및(또는) 교직원의 개입과 학교장 보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1명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관 심	관 심	주 의	경 계	경 계	심 각
없 음 ▪ **(상황)** 학교운영에 영향이 없고, 112 또는 119 신고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		관 심	주 의	경 계	경 계	심 각

사고 등급평가 매트릭스

※ **사고 등급에 따른 보고 기준**

- **(심각)** 학교장 및 교육부에 지체없이 보고
- **(경계)** 학교장 및 교육부에 신속하게 보고 (1시간 이내)
- **(주의)** 학교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 (근무일 기준 1일 이내)
- **(관심)**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내부 관련 문서에 기록·관리

※ **자동적으로 '심각' 등급을 받는 사고(또는 위급상황)**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❸ 수습 · 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관련 매뉴얼 : 대학안전사고 관리지침(교육부, 2022 예정)
[별첨5]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별첨6]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별첨7]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0)
[별첨8]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380.7	374.4	380	1,135.1	
계	380.7	374.4	380	1,135.1	

※ 노후설비 장비교체·보강 및 시설 유지관리비 포함

2 교육시설 안전사고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팀	팀장	강성묵	044-550-1260 smkang@kdischool.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팀	안전 담당자	임선근	044-550-1239 sg_lim@kdischool.ac.kr	
팀장	운영지원팀	팀장	권연택	044-550-1095 ytkwon@kdischool.ac.kr	협조부서
팀원	운영지원팀	보건 담당자	김태섭	044-550-1054 ts_kim@kdischool.ac.kr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이병권	044-550-1105 bklee@kdischool.ac.kr	
팀원	학생지원팀	팀원	김소율	044-550-1224 soyul_kim@kdischool.ac.kr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관련 매뉴얼 : [별첨9] 교육시설안전 인증 자체평가서 작성요령(교육부, 2021)
교육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안전·유지관리 매뉴얼(교육부, 2022 예정)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관련 매뉴얼 : [별첨10]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교육부, 2021)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안전컨설팅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	-	18	5	23	
계	-	18	5	23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타공공기관이자 교육기관이므로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020.6.5.개정, 기획재정부)을 적용받음

** 2021.11月.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3년간 효력이 유지되므로 2025년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취득할 계획임

3 연구실사고 : 해당사항 없음

3. 감염병 확산

1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운영지원팀	팀장	권연택	044-550-1095 ytkwon@kdischool.ac.kr	주관부서
팀원	운영지원팀	보건 담당자	김태섭	044-550-1054 ts_kim@kdischool.ac.kr	
팀장	시설팀	팀장	강성묵	044-550-1260 smkang@kdischool.ac.kr	협조부서
팀원	시설팀	안전 담당자	임선근	044-550-1239 sg_lim@kdischool.ac.kr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이병권	044-550-1105 bklee@kdischool.ac.kr	
팀원	학생지원팀	팀원	김소율	044-550-1224 soyul_kim@kdischool.ac.kr	

□ 위험요인

○ **(코로나-19)**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비말, 호흡기, 눈·코·입 점막 침투로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질환

- 코로나-19 확진자 증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감염병 상황 장기화로 인한 원격수업 및 비대면 교육으로 학습·정서적 결손발생 및 지역간·계층간 학습격차 심화

□ 피해현황

예시 서식 ☞

구 분	2020	2021	2022	평균
감염자 수	-	2	14	5
인명피해(사망)	-	-	-	-

□ 원인분석 ※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예시 내용 ☞

○ **질병관리청, 00보건소, 00지자체 조사 결과**

- 교내 학생,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은 증대추세이며, 감염원인은 해외입국과 밀집시설 이용으로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교육·관리강화 필요

참고 자료 ☞ **[공통자료] 원인분석 작성사례 참조**

□ 예방 ·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예시 내용(1) ☞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비대면 교육)**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각종 활동(수업·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기를 원칙으로 학사 운영

○ **(대면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조기 발견·조치 등 대학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확산을 방지

※ 관련 매뉴얼 : [별첨1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예시 내용(2) ☞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감염병 확산 예방 ·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

❶ 예방 · 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을 예방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작성예 : [안내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❷ 대응 · 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수검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참고 : 선별진료소 이동 방법 >

- 가정에서 발견 : 가급적 자가 차량 이용
- 학교에서 발견 : 보호자 인계 또는 119신고하여 구급대의 지원을 받아 이동

※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

- 학생 및 교직원이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등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 격리 시, 등교(출근) 가능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등교(출근) 중지 학생 및 교직원의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쉽니다.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여 주십시오.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 시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2m)를 하세요.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세요.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세요.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5-1판(21.4.12.)

○ **확진확자 발생 시 대응·조치**

< 확진환자 발생시 보건당국 조치사항 >

①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이동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 위한 역학조사 실시
② 확진환자 이용시설 방역조치(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소독 등) 명령 등 실시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와 접촉한(또는 접촉이 예상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자가격리* 실시

 * 보건당국에서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조치 시행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전담관리인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상태 관리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일시적 이용제한 시설에 대한 소독 방법 등 결정·시행
▪ 시설 이용제한 종료 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계기교육 실시

-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증상 확인 시 선별진료 방문진료·검사

❸ 수습 · 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 관련 매뉴얼 : [별첨1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참고 자료 ☞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

▪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동거생활, 식사, 예배, 강의, 노래방, 상담 등 비말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5-1판(21.4.12.)

참고 자료 ☞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 이동 경로 불명확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 이동 경로 불명확	⇨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및 현장 방역 여건에 따라 결정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예시 서식 ☞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코로나19 대응	70	15	10	95	
계	70	15	10	95	

4. 범죄

1 일반범죄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팀	팀장	강성묵	044-550-1260 smkang@kdischool.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팀	안전 담당자	임선근	044-550-1239 sg_lim@kdischool.ac.kr	
팀장	운영지원팀	팀장	권연택	044-550-1095 ytkwon@kdischool.ac.kr	협조부서
팀원	운영지원팀	보건 담당자	김태섭	044-550-1054 ts_kim@kdischool.ac.kr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이병권	044-550-1105 bklee@kdischool.ac.kr	
팀원	학생지원팀	팀원	김소율	044-550-1224 soyul_kim@kdischool.ac.kr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피해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 예방 ·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등 CEPTED 기법 적용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관련 매뉴얼 : [별첨13]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 [범죄공통] 범죄 예방 ·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❶ 예방 · 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활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신변위협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❷ 대응 · 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❸ 수습 · 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별첨13]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보안관련(경상사업비)	12	12	12	36	
계	12	12	12	36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원	인권센터	전문원	박정환	044-550-1839	주관부서
팀원	인권센터	전문원	최솔이	044-550-1840	
팀장	학생지원팀	선임전문원	이병권	044-550-1105	협조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선임전문원	이하영	044-550-1021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	-	-	-	-	-
	성폭력	-	-	-	-	-	-
	계	-	-	-	-	-	-
피해자 수	성희롱	-	-	-	-	-	-
	성폭력	-	-	-	-	-	-
	계	-	-	-	-	-	-

□ 원인분석

○ **성범죄 고충 처리 전담부서 활성화 필요**

-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2017년 이후 발생하지 않았으나, 잠재적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에 성범죄 고충 처리 부서 및 관련 부서는 예방 및 신고 발생 시 피해자 대처에 관하여 지속적인 안내 예정
- 실태조사를 통하여 잠재적 피해자 발굴 및 사안에 따른 대응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 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 관련 매뉴얼 : [별첨14]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여성가족부, 2022)
[별첨15]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0)

참고 자료 ☞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참고 자료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단계 구분**

❖ **(상담)**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심리·사회적 고충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이며, 실무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

❖ **(조사)** 관련근거, 조사개시, 서류제한 기한,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를 접수·고지 및 조사하는 단계

❖ **(심의)** 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징계·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미비사항·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



※ 대학 성희롱 •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교육부,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준용

인권 침해 및 고충사건 접수 신청서

접수일		접수번호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 신청 시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피신청인 (가해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신청취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인권 침해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 관련 자료(대리인 위임장, 증거관련 서류 등) 첨부

위 신청인은 인권 침해 및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대책

□ 사건 개요

<table>
<tr><td>발생일</td><td>년 월 일</td><td>접수일
(인지 시점)</td><td>년 월 일</td><td>사건 유형</td><td>1:1/多;1/1:多
/
불특정다수</td></tr>
<tr><td>사건
발생기관명</td><td colspan="2">KDI국제정책대학원</td><td>기관 유형</td><td colspan="2">대학교 및 기타 공공기관</td></tr>
<tr><td rowspan="2">가해자&
피해자 관계</td><td colspan="2" rowspan="2"></td><td rowspan="2">가해자&피해
자성별</td><td>가해자</td><td>피해자</td></tr>
<tr><td></td><td></td></tr>
<tr><td rowspan="4">특이사항</td><td colspan="4">기관장에 의한 사건인가?</td><td>예 / 아니오</td></tr>
<tr><td colspan="4">피해자가 다수인가?</td><td>예 / 아니오</td></tr>
<tr><td colspan="4">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가?</td><td>예 / 아니오</td></tr>
<tr><td colspan="4">ㄴ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 일시는 언제인가?</td><td>년 월 일</td></tr>
<tr><td>사건개요</td><td colspan="5">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td></tr>
<tr><td>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기관 조치
사항</td><td colspan="5"></td></tr>
<tr><td>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여부</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 • 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처리 가능
참고: 여성가족부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2021)</td></tr>
</table>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년	합계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500	500	500	1500	
상담비	2000	2000	800	4800	
조사보고서 법률자문비	2000	2000	1600	5600	
불법촬영카메라 점검비	-	-	900	900	
예방 동영상 제작			20,000	20,000	
실태조사 시행			20,000	20,000	
서포터즈 운영			2,200	2,200	
위탁조사비	2000	2000	1200	5200	
위원회 자문/회의참석비	1500	1500	4800	7800	
기타	1200	1200	1800	4200	
계	**9,200**	**9,200**	**53,800**	**72,200**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팀	팀장	강성묵	044-550-1260 smkang@kdischool.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팀	안전 담당자	임선근	044-550-1239 sg_lim@kdischool.ac.kr	
팀원	시설팀	팀원	연현석	044-550-1801 hs_yeon@kdischool.ac.kr	
팀원	시설팀	팀원	전병철	044-550-1802 bc_jeon@kdischool.ac.kr	
팀원	시설팀	팀원	서재권	044-550-1804 jk_seo@kdischool.ac.kr	
팀원	시설팀	팀원	임원재	044-550-1803 wj_lim@kdischool.ac.kr	
팀장	운영지원팀	팀장	권연택	044-550-1095 ytkwon@kdischool.ac.kr	협조부서
팀원	운영지원팀	보건 담당자	김태섭	044-550-1054 ts_kim@kdischool.ac.kr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흄·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관련 매뉴얼 : [별첨16]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❶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1년도 산업재해 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22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대상근로자 선정		교육방법 선정		교육 실시		서류보존
• 전직원 • 관리감독자 • 신규 입사자	⇨	• 위탁/집체/현장/인터넷	⇨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 서류 기록보존 (3년 보존 권장)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측정대상물질 확인		예비조사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보고
• MSDS 확인 (작업환경측정 의뢰)	⇨	•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예비조사 (작업환경대상 여부확인)	⇨	• 측정방법, 측정시간에 따라 측정실시	⇨	• 서류의 보존기한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대상근로자 선정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 전체 근로자 – (사무직) 2년에 1회 – (사무직 외) 1년에 1회	⇨	•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또는 근로자 개별 희망기관에서 실시	⇨	• 검진 대상자 독려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대상작업 파악	⇨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보호구 지급	⇨	서류보존
•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		• 작업에 따른 적절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 보호구지급 대장 서류 기록보존(3년)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하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❷ 대응 · 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 · 피해상황, 조치 ·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❸ 수습 · 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관련 매뉴얼 : [별첨16]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② 사회재난 항목 안전관리비에 포함됨

* P.17 참조

≪ 중대재해 예방 ·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❶ 예방 · 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 안전보건 법규 등 관련 규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제거 등 재해예방과 개선 활동 지속적 실시

▪ 모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안전문화 조성·지원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시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사업장별(특수학교, 소속기관, 본부 순)·직종별(급식, 청소, 시설 등)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분기별 1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주요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해당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자체 평가 실시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게시판 내 안전보건 건의함을 신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의견수렴	노사 간담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 협의)	개선조치
• 현장방문 의견 청취 • 의견청취함(WIKI 게시판) • 안전보건교육	⇨ • 요청된 의견에 대한 재해예방 반영여부 검토	⇨ • 안전조치
•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너무 커서(100L) 근골격계에 부담	*• 노사 간담회(또는 안전관련 회의)에서 반영 여부 검토*	*• 기관내 분리배출 봉투를 50L로 교체*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청소·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교육부, '22.)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 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어 기관 임의의 기준·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인력(2인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설치 추진

※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의무적으로 설치

- 전담조직의 중대재해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두 업무는 구분 운영 추진

❷ 대응 · 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 · 피해상황, 조치 ·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❸ 수습 · 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관련 매뉴얼 : [별첨17] 2022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2)

Ⅲ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공통	유·초·중·고	-	-
	대학	-	-
연구실		-	-

2.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보험	2021-2-4 2022-2-4	2	583	1,247	-	-	-	-	외국인학생 담보
2022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보험	2022-2-4 2023-2-4	2	583	1,247	-	-	-	-	외국인학생 담보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등)	대인	200,000	1,0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	총보상한도액 무한
교내·외 (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치료비	2,000	2,000	자기부담금 10만원
	사망,후유장해	-	-	

3. 재산종합보험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면적당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재산 종합보험	2021-4-1 2022-4-1	0.2	44,779	9,267	-	-	-	-	무사고

(단위 : 천원)

기준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대당 보험료 (A)	승강기 대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2021-4-1 2022-4-1	25.8	15	387	-	-	-	-	무사고

* 기타 가스화재책임보험 등은 KDI에서 가입하여 관리함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시설관리자배상책임 (대인)	100,000	500,000	
시설관리자배상책임 (대물)	-	300,000	
구내치료비	1,000	2,000	자기부담금 10만원
주차장배상책임	100,000	200,000	

4.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해당사항 없음

* KDI대학원은 KDI의 부설기관으로 공동으로 청사를 사용하고 있음

5. 연구실안전보험: 해당사항 없음

* KDI대학원은 경제인문사회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별도 연구실 없음

Ⅳ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대학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대비 교육훈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팀	팀장	강성묵	044-550-1260 smkang@kdischool.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팀	안전 담당자	임선근	044-550-1239 sg_lim@kdischool.ac.kr	
팀원	시설팀	팀원	연현석	044-550-1801 hs_yeon@kdischool.ac.kr	
팀원	시설팀	팀원	전병철	044-550-1802 bc_jeon@kdischool.ac.kr	
팀원	시설팀	팀원	서재권	044-550-1804 jk_seo@kdischool.ac.kr	
팀원	시설팀	팀원	임원재	044-550-1803 wj_lim@kdischool.ac.kr	
팀장	운영지원팀	팀장	권연택	044-550-1095 ytkwon@kdischool.ac.kr	협조부서
팀원	운영지원팀	보건 담당자	김태섭	044-550-1054 ts_kim@kdischool.ac.kr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이병권	044-550-1105 bklee@kdischool.ac.kr	
팀원	학생지원팀	팀원	김소율	044-550-1224 soyul_kim@kdischool.ac.kr	

□ 2021년 교육 · 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1.4.12.~16	23분	111	-
	‘21.11.8~14	23분	111	
교직원	‘21.4.12.~16	23분	8	-
	‘21.11.8~14	23분	8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화재안전교육	▪ 코로나19로 인하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 (* 재난 발생시 상황 및 대피. 소화기/소환전 사용법 영상)
소방점검	▪ 체크리스트를 통한 소방점검 및 화재안전교육 확인 실시

□ 2022년 교육 · 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2.4月 중	미정	120	-
교직원	2022.4月 중	미정	8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화재안전교육	▪ 코로나19로 인하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 (* 재난 발생시 상황 및 대피 체험 교육)
소방점검	▪ 체크리스트를 통한 소방점검 및 화재안전교육 확인 실시

붙임 **소방점검 및 화재안전교육 체크리스트**

□ 건물명 : 기숙사 101동, 102동

□ 소방점검

점 검 항 목	결 과	지 적 사 항	개 선 대 책
1. 비상연락망 체계도 작성유무			
비상조직도 작성유무(소방계획서 확인)	O	없음	
기숙사 내 비상연락망 작성유무(방화관리자 등)	O	없음	
2. 발화요인 제거여부			
전기 과부하(콘센트 다중연결 사용 등)	O	없음	
전기스위치, 분전함 내 차단기 용량과 규격	O	없음	
건물 내 흡연 여부(라이터, 재떨이, 넘새 등 확인)	O	없음	
개인전열기구 비치여부	O	없음	
3. 소방시설(소화, 방화, 경보, 피난설비 등) 상태			
가연물과 정화원의 근접 여부	O	없음	
화재 경보 및 피난설비 상태	O	없음	
소화기 및 소화시설 상태	O	없음	
주방화기 관리상태	O	없음	
주출입구 유도등(유도표지) 설치 여부	O	없음	
소화펌프 관리상태	O	없음	
비상구 관리상태(출입문표시, 폐쇄 유무)	O	없음	
출입구 앞 피난장애물 비치여부	O	없음	
유해가스발생 내장재 사용여부	O	없음	
환기시설 설치여부	O	없음	

□ 화재안전교육

점 검 항 목	결 과	지 적 사 항	개 선 대 책
화재사실 전파 여부	O	없음	
대피시설 이용 / 대피행동요령 숙지여부	O	없음	
안전교육 실시 등	O	없음	

표기방법	양호 : O 미흡 : △ 불량 : X 해당 없음 : -	평 가	양호, 불량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팀	팀장	강성묵	044-550-1260 smkang@kdischool.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팀	안전 담당자	임선근	044-550-1239 sg_lim@kdischool.ac.kr	
팀원	시설팀	팀원	연현석	044-550-1801 hs_yeon@kdischool.ac.kr	
팀원	시설팀	팀원	전병철	044-550-1802 bc_jeon@kdischool.ac.kr	
팀원	시설팀	팀원	서재권	044-550-1804 jk_seo@kdischool.ac.kr	
팀원	시설팀	팀원	임원재	044-550-1803 wj_lim@kdischool.ac.kr	
팀원	건강관리실	보건담당 자	김태섭	044-55-1054 ts_kim@kdischool.ac.kr	
팀원	인사팀	교육 담당자	이지윤	044-550-1305 jiyoon_lee@kdischool.ac.kr	협조부서

□ 2021년 교육 · 훈련 결과

○ 추진사항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공공기관실무자교육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담당자)	'21.10.1~12.20	10	1	-
보건담당자	-	-	-	-
전기안전관리자	-	-	-	-
소방안전관리자	-	-	-	-
교직원 (안전보건유관부서)	'21.10.28	4	9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법정의무교육 이수
협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내부심사 교육

□ 2022년 교육 · 훈련 계획

○ 추진계획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천원)
공공기관실무자교육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담당자)	미정	10	1	-
보건담당자	미정	10	1	500
전기안전관리자	미정	10	1	500
소방안전관리자	'22.2.24~2.29	40	1	200
교직원 (안전보건유관부서)	미정	4	-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법정의무교육 이수
협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내부심사 교육

4. 연구실 안전교육: 해당사항 없음

5.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예시 서식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운영지원팀	선임전문원	권연택	044-550-1095, tkwon@kdischool.ac.kr	주관부서
팀원	운영지원팀	선임행정원	김태섭	044-550-1054, ts_kim@kdischool.ac.kr	

□ 2021년 교육·훈련 결과

예시 서식 ☞ ※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4	4	170	-
감염병 진료 및 보호	4	4	170	-
감염병 예방 수칙	4	4	170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감염병 예방교육	▪ 감염병 예방 교육 ▪ 방역관리자 교육 ▪ 코로나19 상황 대응 교육

□ 2022년 교육·훈련 계획

예시 서식 ☞ ※ 금년도 교육훈련에 대한 주요 방향 및 계획에 대해 기술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4	4	170	-
감염병 진료 및 보호	4	4	170	-
감염병 예방 수칙	4	4	170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감염병 예방교육	▪ 감염병 예방 교육 ▪ 방역관리자 교육 ▪ 코로나19 상황 대응 교육

5.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서식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인사팀	전문위원	양혜정	044-550-1265	주관부서
팀원	인사팀	위촉 전문원	윤한솔	044-550-1169	
팀원	인권센터	전문원	박정환	044-550-1839	협조부서
팀원	인권센터	전문원	최솔이	044-550-1840	

□ 2021년 교육·훈련 결과

예시 서식 ☞ ※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1.01- 2021.12	4시간	430/745	5,000,000
교직원	2021.10- 2021.11	4시간	156/171	3,600,000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	▪ human rights and gender violence (인권 및 젠더 폭력) ▪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성희롱*성폭력) ▪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 ▪ sex trafficking (성매매)
교직원대상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2022년 교육 · 훈련 계획

예시 서식 ☞ ※ 금년도 교육훈련에 대한 주요 방향 및 계획에 대해 기술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시청각 및 소규모 교육제공	5회	440명	5,500,000
교직원	시청각	1회	156/171	3,600,000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학생대상 소규모 성인지 교육	▪ 분기별 소규모 성 감수성 향상 교육(총3회 예정)
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	▪ human rights and gender violence (인권 및 젠더 폭력) ▪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성희롱*성폭력) ▪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 ▪ sex trafficking (성매매)
교내 예방동영상 제작	▪ 교내 재학생(유학생) 대상 성관련 이해도 향상을 위한 예방 동영상 자체제작
교직원대상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Ⅴ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KDI대학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실 소유주인 KDI(본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안전사고/범죄/감염병확산/중대재해/비상사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분	담당기관(담당자)	연락처(유선)	기능
내부	남**	044-550-4012	(연)경영부원장
	김**	044-550-4333	(연)경영지원실장
	이**	044-550-4324	(연)시설팀장 소방안전관리자
	장**	044-550-4118	소방설비 과장
긴급 대응 기관	세종소방서	044-300-6119	화재진압, 구조
	보람119안전센터	044-300-8653	"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388-5600	전기시설
	세종 충남대병원	044-995-3010	응급대응
	대한엘리베이터	042-526-0375	E/V관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세종지역본부	042-485-0019	가스시설
	고용노동부	044-202-7999	산업안전
	안전보건공단	042-620-5680	산업안전
유관 협력 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044-211-1381	상위기관
	국무조정실	044-200-2860	상위기관

2) 상황실 운영 시

1 조직개요

편성	자위소방대	□ 편성인원 : 대장 1명, 부대장 1명, 대원 30명 □ 조직구성 □ 지휘반(_3명) □ 진압반(_3명) □ 구조구급반(_3명) □ 대피유도반(_21명) *DA, 어린이집교사 포함
	초기대응체계	□ 편성인원 : __6__명 □ 조직구성 : □ A조(_3명) □ B조(_3명) □ C조(__명) □ D조(__명)
운영시간		□ 주간편성(_09_~_18_시) □ 야간편성(_18_~_09_시) □ 휴일(공휴일)

2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044-550-내선)	개인
대 장	대학원장실	유**	총괄지휘	1001	010-****-****
보고총괄	비서업무 겸임	하**	실무총괄	1003	010-****-****
지휘반	기획처장	김**	총괄보좌	1075	010-****-****
	경영지원실장	임**	총괄보좌	1068	010-****-****
	(연)시설팀	이**	총괄보좌	4324	010-****-****
진압반	시설팀	연**	초기대응	1801	010-****-****
	시설팀	임**	초기대응	1239	010-****-****
	시설팀	강**	초기대응	1260	010-****-****
구조구급반	운영지원팀	김**	응급구조	1289	010-****-****
	운영지원팀	김**	응급구조	1054	010-****-****
	운영지원팀	천**	응급구조	1191	010-****-****
대피유도반	기숙사	사감	피난유도	1800	010-****-****
	기숙사	사감	피난유도	1800	010-****-****
	게스트하우스	경비	피난유도	4116	010-****-****
	어린이집원장실	김**	피난유도	044-715-5533	010-****-****
초기대응체계	구 분	A조( ) (09~18시)	B조( ) (18~09시)	C조( ) (__~__시)	D( ) (__~__시)
	운영책임자	장**	전**		
	대 원	천** 한**	서** 임**		
	(*) 통제실, 수신반 근무자로 편성				

3) 업무분장

통제조직	업무분장 내용	비고
주:경영지원실장 부:시설팀장	- 전 부서 비상체제로의 전환 - 비상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결정	
안전 조직 (시설팀, 운영지원팀, 학생지원팀)	- 인원의 동원과 지휘 - 필요한 인원과 장비 증원 - 비상사태의 영향파악과 대피상황 결정 - 사고 속보의 작성과 보고 -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실행	
초기소화팀 (시설팀)	- 발화지점 확인 - 소화기 사용 - 잔불 확인	
피해복구팀 (시설팀, 운영지원팀)	- 피해정도 확인 - 필요자원 확인 - 복구준비	
인명구조팀 (시설팀, 학생지원팀)	- 인명구조 및 부상자 확인	
비상연락팀 (시설팀, 운영지원팀 학생지원팀)	- 비상지휘담당을 보좌하고, 지시에 따름 - 경보 취명, 비상방송 - 비상상황의 파악과 보고 - 비상연락망의 가동	

4) 비상 시나리오(예시)

화재발생 훈련 시나리오				
제 목	**시 간**	**임무수행**	**시나리오**	**행 동 요 령**
화재발생	-	-	폐기물처리장에서 담배꽁초가 발화원이 되어 화재발생	-
상황전파	즉 시	최 초 발견자	불이야 외침, 소화기 발견 및 초기진화 시도, 판단 후 소방서 신고	최초 발견자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무실로 화재발생 장소, 규모 등의 상황을 보고한다.
구조활동	즉 시	의료구호 분대	환자응급처치 및 후송준비	긴급 대피한 경상자 2명에 대한 응급조치 및 후송, 화재에 고립된 인명의 구조 및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 장비의 확보
비상연락	5분내	본부분대	관계기관 및 병원차량 현장 인근 도착 및 사고 장소로 유도	병원. 소방서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전직원에 비상 연락 및 비상사태 대피를 통보한다.
초기진화	5분내	소수방 분대	사무실로 화재 확산 방지 및 초기화재 5분 이내 진화 활동	사무실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진화 및 전도 통로를 차단하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한다.
피난유도	5분내	방호복구 분대	사무실 등 전근로자가 건물 밖으로 5분 이내 대피하도록 유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고지점으로 대피 유도하고 관계자외 사고지점 접근 통제를 실시한다.
차량유도	10분내	방호복구 분대	소방, 병원관계 차량 도착시 사고지점으로 신속한 유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고지점으로 이용유도 도착 후 관계자외 사고지점 접근 통제를 실시한다.
통제	10분내	본부분대	관계기관과 협조	관계기관과 협조 현장의 상황을 숙지하고 판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출실시	15분내	방호복구 분대	주요서류 및 비품 반출	반출 서류 목록에 따라 주요서류를 판단 사무실 밖으로 신속히 반출한다. (화재의 확산위험이 없는 경우)
진화작업	15분내	관계기관	현장도착, 소화 및 구호 작업	소화 및 인명구조 활동 사상자 후송
상황파악	20분내	본부분대	현장상황 파악	현장과 STAFF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유지. 현장상황 보고 및 2차 재해 위험성 파악, 대책수립.
사고지점 통 제	20분내	방호복구 분대	사고지점 통제	관계기관 차량유도 및 주변 교통정리 관계자 이외의 출입차단 환자후송차량의 최단거리 유도
복구작업	통제후	방호복구 분대	현장 복구	재발화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화재후 잔재처리 사후 재해 원인 조사에 필요한 지점은 원상태 유지(경시테이프 설치)
사후관리	복구후	방호복구 분대	사후 관리	인명 및 환경피해 현황 파악 사고대책반 해체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오염의 소지가 있는 폐기물을 적법한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

Ⅵ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역할과 임무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부서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점검, 대책수립 수행

○ 위험별 상황관리전담 부서에서는 지휘부(총괄 담당, 상황 총괄), 실무반(상황 대응, 사고 수습, 당직), 협조부서(언론 대응, 예산 협력,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상황 대응 및 관리 수행

2. 관계 법령 등 연계

○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및 위기대응 표준 · 실무 · 행동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계 법령 · 규정 · 매뉴얼 개정 시 대학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 시 · 도 및 시 · 군 · 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과 연계 · 협조하여 대학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필요

3.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 Buisiness Continuity Plan) 수립 · 시행

○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안내 실시

○ 각 대학은 중대본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기능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 비상상황에도 유지해야할 필수·핵심기능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

4. 대학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 · 운영

○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KDI대학원 내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수립 및 개선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팀	팀장	강성묵	044-550-1260 smkang@kdischool.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팀	안전 담당자	임선근	044-550-1239 sg_lim@kdischool.ac.kr	
팀원	시설팀	팀원	연현석	044-550-1801 hs_yeon@kdischool.ac.kr	
팀원	시설팀	팀원	전병철	044-550-1802 bc_jeon@kdischool.ac.kr	
팀원	시설팀	팀원	서재권	044-550-1804 jk_seo@kdischool.ac.kr	
팀원	시설팀	팀원	임원재	044-550-1803 wj_lim@kdischool.ac.kr	
팀장	운영지원팀	팀장	권연택	044-550-1095 ytkwon@kdischool.ac.kr	협조부서
팀원	운영지원팀	보건 담당자	김태섭	044-550-1054 ts_kim@kdischool.ac.kr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이병권	044-550-1105 bklee@kdischool.ac.kr	
팀원	학생지원팀	팀원	김소율	044-550-1224 soyul_kim@kdischool.ac.kr	
팀원	인권센터	팀원	최솔이	044-550-1840 soli_choi@kdischool.ac.kr	
팀원	인권센터	팀원	박정환	044-550-1839 jh_park@kdischool.ac.kr	
팀원	인사팀	교육 담당자	이지윤	044-550-1305 jiyoon_lee@kdischool.ac.kr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감염자 수		-	-	-	-	2	0.4
		인명피해(사망)		-	-	-	-	-	0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② 성범죄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② 중대재해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6.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예산	집행	예산
계	500.7	454.4	462.6
1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395.6	380.7	374.4
①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대책사업비	-	-	-
② 노후 설비 및 장비의 교체·보강, 작업장 환경개선비	21.2	19.3	24.6
③ 청·관사 등 업무시설 유지관리비(시설관리용역 등 외주비 포함)	374.4	361.4	349.8
2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	63.8	57.5	63.9
① 안전사업비	-	-	-
② 안전관리비	-	-	-
③ 안전진단·점검, 안전검사, 각종 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63.8	57.5	63.9
3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등 지원예산	22.0	4.2	5.0
① 안전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	-	-
②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운영 및 관련 평가 비용	22.0	4.2	5.0
③ 안전관리 운영체계 관련 문서 등 개발 비용	-	-	
4 안전 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비 등	-	0.7	-
① 안전 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	0.7	-
② 안전 관련 장비 등	-	-	-
5 안전 관련 교육·훈련·홍보	8.0	-	8.0
① 안전교육 및 훈련비	8.0	-	8.0
② 안전 관련 행사추진 비용 등 홍보성 비용	-	-	-
6 안전 R&D	-	-	-
① 안전 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	-	-	-
② 안전 관련 연구개발(R&D)	-	-	-
7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SOC 구축 및 관리	-	-	-
①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 사업	-	-	-
②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각종 예방·정비 사업관리	-	-	-
8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	-	-
① 본사 및 사업소 등 안전업무 전담부서 인력의 인건비	-	-	-
② 기타 안전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	-	-	-
9 기타	11.3	11.3	11.3
① 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운영	-	-	-
② 화재보험, 안전 관련 회비 등 기타 경비	11.3	11.3	11.3

※ KDI대학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으로 별도 예산비목을 활용함